
퇴직연금 업무보고

- 그간 퇴직연금 개편 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-

■ ■ **목 차** ■ ■

I. 성과 및 과제	1
II. 제도 개편 추진 사항	3
III. 향후 추진계획	5



고용노동부

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

I. 성과 및 과제

1 [성과] 양적 성장 가속화, 수익률 및 연금성 점진적 개선

□ **(양적 성장)** '25년말 적립금 501조원(잠정)으로 전년말(431조원) 대비 약 70조원(+16.1%) 증가, 400조원 경신 1년만에 500조원 돌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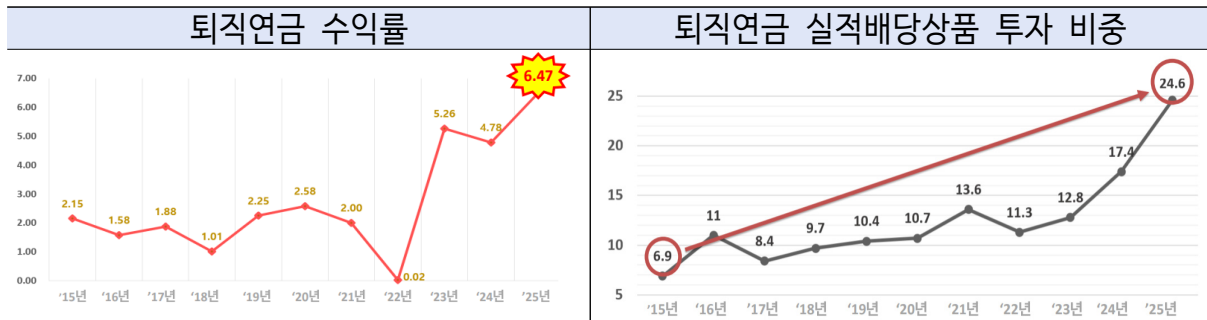
* ▲('20년) 255.5 ▲('21년) 295.6 ▲('22년) 355.9 ▲('23년) 382.4 ▲('24년) 431.7

□ **(수익률 개선)** '25년 연간 수익률 6.47%(잠정)로 전년 대비 1.7%p 상승, 퇴직연금 수익률 집계* 이래 최고 수준

* ▲('20년) 2.58 ▲('21년) 2.00 ▲('22년) 0.02 ▲('23년) 5.26 ▲('24년) 4.7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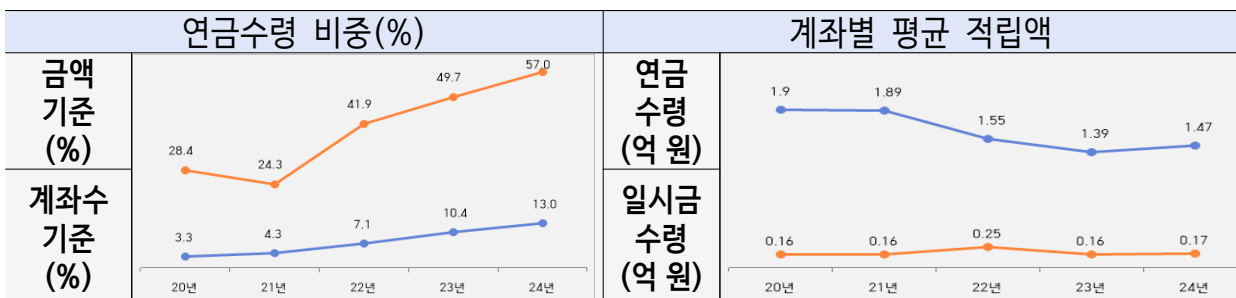
○ 실적배당형 투자상품 비중이 대폭 상승('15년 6.9% → '20년 10.7% → '25년 24.6%)하는 등 저축에서 투자로 퇴직연금 운용 변화 중

* '25년 실적배당형 수익률은 16.80%로 원리금 보장형 3.09%의 5배 → 수익률 상승 견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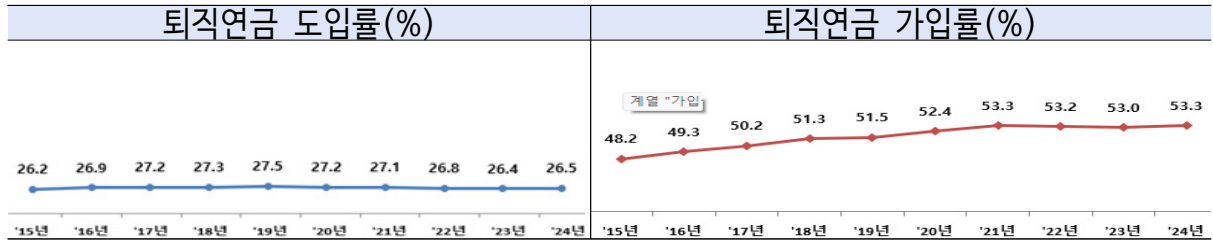
□ **(연금수령 확대)** '20년 대비 4년 만에 연금수령 계좌 비중 약 4배 증가(3.3% → 13%), 수령금액 비중(28.4% → '24년 57%) 2배 증가

○ 평균 적립금은 연금계좌 1억 4,694만 원, 일시금계좌 1,654만 원 → 적립금이 축적될수록 연금 수령 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



② [과제] 사각지대 여전, 장기 적립 등 연금 기능 미흡

- (사각지대) 최근 10년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6.5%에서 정채근로자 가입률도 최근 53% 수준에서 정체 中



- 특히, 30인 미만 사업장 도입률은 23.2%로 300인 이상의 1/4수준 → 영세기업 노동자일수록 노후보장, 체불 위험에 노출*

* ('24년) 전체 체불액 中 퇴직급여 체불 8,229억원(약 40%), 체불사업장 92%가 30인 미만
 <'24년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제도 도입·가입 현황(%)>

구분	5인미만	5-9인	10-29인	30인미만	30-49인	50-99인	100-299인	30-299인	300인~
도입률	10.6	32.7	57.3	23.2	74.2	82.2	88.7	79.5	92.1
가입률	11.9	29.5	48.2	33.0	56.0	60.9	69.1	63.0	70.6

- (원리금보장 중심) 최근 수익률 및 투자상품 비중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75%가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하는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

* '25년 기준 5년 평균 수익률 2.86%, 10년 평균 수익률 2.31%

- (장기적립 미흡) 이·퇴직, 주거 등 현실적 수요로 인해 연금 수령기 (만 55세) 이전 중도 활용에 대한 선호 지속

- 중도활용 총 17.4조 中 중도해지 15조(86.2%), 중도인출 2.4조(13.8%)

* ▲ (중도해지) 이·퇴직 후 연금수령 기(만55세) 전에 계좌(IRP) 해지하여 인출
 ▲ (중도인출) 계속근로 중 주택구입 등 사유로 중간에 적립 금액을 인출하여 사용

- 최근 개선 추세를 보이지만 일시금 수령 비중이 여전히 높아 노후를 보장하는 연금 기능이 미흡한 상황(계좌 기준 87%)

⇒ ① 사각지대 해소 및 노동자 수급권 보장
 ② 수익률 제고 및 연금성 강화 등 제도적 개편 추진 필요

II. 제도 개편 추진 사항

◇ 중소퇴직기금 가입 대상 확대 등 **제도 개편 신속 추진** 中
→ 기금형,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등 **근본적 제도 개편**
사항은 **노사정 공동선언 및 사회적 대화 등 통해 추진**

※ 국정과제: ①퇴직연금 도입(사외적립) 의무화, ②1년 미만 등 노후소득 보장,
③기금형 제도 활성화, ④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확대 등

1] 제도 개편 추진 성과

- **(중퇴기금 가입대상 확대)** 1)現 30인 미만 → 100인 이하 사업장 확대,
2)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중퇴기금(개인부담금 계정, 자부담)에 가입 가능
(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('26.3.17. 공포) → '26.7.1. 시행)

[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('22.9월 도입) 현황 및 성과]

- **[사업장·가입자]** 도입 사업장 3.6만 개소, 가입 근로자 16.4만 명('25.12월)
- **[적립금]** 14,907억 원 / 수익률 8.67%, 누적총수익률 24.62%('25.12월)

- **(연금수령 인센티브 확대)** 20년 넘게 퇴직연금을 수령할 경우 퇴직
소득세의 50%(기존 40%)를 감면*토록 세법 개정(재경부) 완료

* (개편) 과세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50~70% 부과(10년 이하 70% → 10년 초과 60%
→ <신설>20년 초과 50%) <소득세법 개정, '25.12.3>

- **(퇴직연금 도입 지원)** 퇴직연금 도입 중소기업 대상 3,300억 규모
용자지원 사업* 실시(신용보증기금 + 10개 은행, '25년 11월~)

* 10개 은행 출연(132억원), 신용보증기금의 협약보증 → 기업당 최대 5억원 경영자금 대출

- **(사외적립의무 이행 강화)** 노동자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 강화를 위해
민관 합동 DB 최소적립의무 이행 캠페인* 실시

* ①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지표 개선(최소적립률 이행 노력 반영, 4월) ② DB 내실적 운영을
위한 민관 업무협약(IBK, 5월), ③ 재정검증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(25,000개소, 12월) 등

- 최소적립의무 위반 공공부문(공기업 등) 적발 및 과태료 부과(5개소, 11월)

② 퇴직연금 기능강화를 위한 ‘노사정 공동선언’

□ (경과) 「퇴직연금 기능강화 노사정 TF」 발족('25.10.28.)

↳ 노동계, 경영계, 정부, 청년, 공익(금융·연금·노동·사회복지 전문가) 등 총 18명

- 기금형 활성화, 도입 의무화에 대해 전체회의 5차까지 진행(10~12월)
 - 간사회의(1.12~2.4.까지 4차례) 통해 합의 도출('26.2.4.)
 - 전체회의 추인 후 ‘노사정 공동선언문’ 발표('26.2.6.)

□ (주요내용) '05년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노사가 퇴직연금 제도개선에 합의한 의미 있는 성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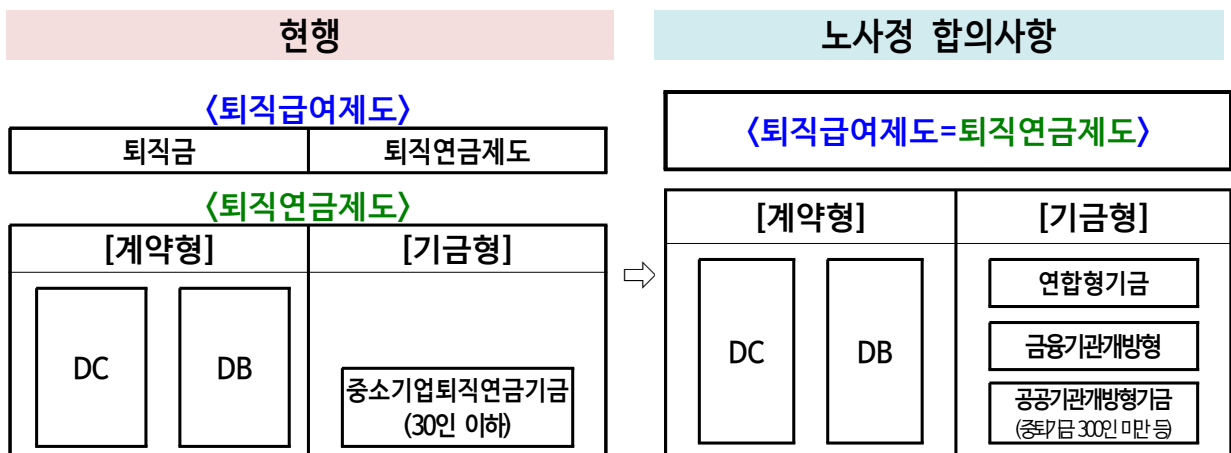
○ (기금형 활성화) 가입자 선택권 확대 및 수익률 개선

- ①계약형 공존, ②'금융기관 개방형', '연합형' 신규 도입, ③중퇴기금 300인 이하 단계적 확대 등 공공기관 개방형 활성화, ④가입자 이익과 무관한 기금 활용 금지, ⑤수탁자책임 등 수급권 보호

○ (사외적립 의무화) 임금체불 예방 및 노동자의 수급권 보장

- ①쏠사업장 단계적 의무화, ②영세·중소기업 실태조사 통해 시기 결정, ③재정 등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, ④사외적립 이행력 제고, ⑤퇴직연금 운영 부담(교육 등) 완화 등

〈노사정 공동선언에 따른 변화 내용〉



Ⅲ. 향후 추진계획

① [제도 개편]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 조치

- ❖ 민관 합동 실무작업반 운영, 실태조사 등 통해 제도 세부 내용 설계(~7월)
→ 공동선언문 내용 토대로 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 '26년 연내 개정 추진

1.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활성화

○ [내용] 기금형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

- 퇴직급여의 후불임금 성격과 제3자 운용이라는 기금형의 특성을 고려한 노동자 수급권 보호 및 수탁자책임 확보 필요

○ [검토 필요과제] 다양한 분야, 전문성 높은 과제 검토 필요

- (인허가 요건) 모회사 요건, 수탁법인 인적·물적요건, 수탁법인 설립 및 인가 절차, 규모의 경제를 고려한 허용 규모 등
- (기금운용체계) 가입자 이익 최우선 원칙 구체화, 지배구조(이사회, 하부위원회, 내부통제체계 등),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자산운용규제 등
- (관리·감독) 상품(위험도, 수익률 등) 공시 의무·주기·방법, 적립금 운용 성과 평가 체계(수익률 평가 기준), 관리·감독 주체 등

⇒ [시행방안] 민관 합동 실무작업반(3.6 발족) 통해 유형별(①금융기관개방형, ②연합형, ③공공기관개방형) 세부 제도안 마련(~7월)

○ (구성) 관계부처(노동부, 재경부, 금융위, 금감원 등), 전문가, 노사 등

○ (운영) 효율적 운영 위해 2개 분과 작업반(수탁자책임, 운영) 구성
→ 분과작업반 작성 안건을 실무작업반에서 논의하는 구조



2.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

- [내용] ①사외적립을 통한 임금체불 예방 및 ②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강화를 위한 쏘사업장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추진
 - 사외적립 의무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세기업 사용자의 '유동성 부담' 완화 방안 마련 필요
 - 사용자의 '퇴직연금 운영 부담' 완화를 위해 가입자 교육은 전문성을 갖춘 퇴직연금사업자가 수행하도록 제도개선 병행

⇒ **[시행방안]** 실태조사 후 단계적 의무화 시기 및 지원방안 마련

- ① (실태조사) 기업 규모별 퇴직급여 운영 현황, 유동성 여력, 애로사항, 지원 희망사항 등 설문 및 FGI 조사(~6월)
 - * 실태조사 설계·분석 등 전 과정에서 연구팀과 노사정 간 소통하여 신뢰성, 수용성 확보
- ② (대안 마련) 실태조사 토대로 단계적 의무화 및 영세사업장 지원방안 마련(~7월)
- ③ (법안 개정)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개정 추진(~12월)

3. 1년 미만 노동자, 특고 등 퇴직급여 사각지대 해소

- [내용] 퇴직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1년 미만, 초단시간 노동자 및 특고·플랫폼 등을 위한 다양한 노후소득보장 방안* 검토

* 퇴직연금, 건설근로자공제회 방식의 적립형 공제 모델 등

⇒ **[시행방안]** 실태조사 후 사회적 대화 통해 대안 검토

- ① (실태조사) 1년 미만 고용관계 종료 사유(계약기간, 자발/비자발적 등 이직 사유 등), 계약갱신 관행(동일업체 재계약 여부 등) 등(~7월)
- ② (사회적대화) 경사노위 등 사회적협의체를 통해 1년 미만, 특고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안 검토(7월~)

* 퇴직연금, 건설근로자공제회 방식의 적립형 공제 모델 등

② [내실화] 수급권 보호 강화 및 연금 수령 촉진

1. 수급권 보호 강화

- **(사용자 관리·감독)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의 의무이행 실태 파악 및 감독**(의무미이행에 따른 시정지시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) **지속 추진**
 - * ▲(DB형) 하반기 500개 감독, 순차 확대 ▲(DC형) 미납 부담금 파악 및 조치계획 마련
- **(금융기관 관리·감독) 가입자 수급권 및 권익 침해 관련 부당한 업무 관행** 검사, **선관주의 의무 준수 여부** 점검(금감원 협조)
 - 사용자 의무이행 독려, 미이행 사업장 노동부 통보 등 **적립금 납부 단계에서의 퇴직연금사업자 역할 강화**

2. 수익률 제고

- **(디폴트옵션) 디폴트옵션 상품 수익률 등 성과 평가 최초 실시**
→ 미흡 상품에 대해서는 **불이익 부여**(가입중지, 퇴출 등) **추진**
- **(투자일임) 현재 규제샌드박스 통해 시범 운영 중인 퇴직연금 로보 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시범사업***의 성과 분석을 거쳐 **제도화 검토**
 - * 알고리즘,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투자자 성향에 따라 ‘자동’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서비스(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적 투자조언장치)

3. 연금수령 촉진

- **(담보대출) 담보대출상품 신규 출시 유도**(담보 제공 시 압류 허용), **적정금리 설정 등 담보대출 활성화** → **중도인출 유인 억제**
- **(상품 다양화) 장수(longevity), 투자 수익, 물가 상승 등 연금수령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는 다양한 연금 상품개발**(종신연금 등) **유도**

